

서울특별시 마포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1. 제 안 경 위

- 가. 제 출 자: 서울특별시
- 나. 의안번호: 제2021호
- 다. 제출일자: 2020. 10. 16.
- 라. 회부일자: 2020. 10. 26.

2. 제 안 사 유

- 마포자원회수시설은 「폐기물관리법」 제5조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폐기물 처리시설로서,
- 전문 법인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마포자원회수시설의 안정적인 운용 및 유지·관리를 담당할 위탁운영사업자를 공개 선정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시설 현황

- 시설명: 마포자원회수시설
- 소재지: 서울시 마포구 하늘공원로 86(상암동)
- 부지면적: 58,435m²
- 시설규모: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750톤/일(250톤/일×3기)
- 처리권역: 5개 자치구(종로구, 중구, 용산구, 서대문구, 마포구)
- 주 용 도: 생활폐기물 안정적 처리 및 소각열 회수 자원화
- 주요장비: 소각설비, 재처리설비, 연소가스냉각설비 등

나. 위탁사무 내용

- 위탁기간: 3년(2021.6.1.~2024.5.31.)
- 위탁사무
 -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반입 및 처리
 - 소각, 환경설비 등 관련 시설의 운전 및 유지·보수
 - 고압증기 생산 및 판매
 - 자원회수시설의 부대시설 유지관리
 - 자원회수시설 운영에 필요한 정비, 용역, 물품 등 계약·관리 및 일반사무처리
 - 기타 자원회수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제반 업무 등
- 소요예산(비정산비): 17,877백만원
 - 1차년도(2021.6.~2022.5.) 5,784백만원, 2차 5,957백만원, 3차 6,136백만원
- 수탁기관 선정방법: 공개모집 후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

다.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현황

○ 민간위탁 추진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5조(폐기물의 광역 처리)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추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

○ 민간위탁 추진현황

- 시설건설: 2001.11.~2005.5.(GS건설, 한라산업개발, 현대모비스, 현대건설)
- 1차 위탁관리: 2006.6.~2009.5.(3년, 한라산업개발 외 3개사)
- 2차 위탁관리: 2009.5.~2012.5.(3년, 한라산업개발)
- 3차 위탁관리: 2012.6.~2015.5.(3년, 한라산업개발)
- 4차 위탁관리: 2015.6.~2018.5.(3년, 한라산업개발)
- 5차 위탁관리: 2018.6.~2021.5.(3년, 한중산업개발, 환경시설관리)

라. 민간위탁(재위탁) 필요성 및 기대효과

- 필요성: 생활폐기물 반입·처리 및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관리 등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탁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함
- 기대효과: 민간위탁에 따른 인력·예산 절감 효과 및 전문적인 시설 운영관리에 따른 서비스 품질 향상이 기대됨

마. 제5차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적정(2020.7.12.)

4. 참 고 사 항

가. 관계법령: 「폐기물관리법」 제5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6조

「서울특별시 자원화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자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5. 검토 의견

가. 개요

-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장이 마포자원회수시설에 대한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 계획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사전에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임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사무 및 운영 등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 있는 민간위탁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④ 시장은 제15조제6항 단서에 따라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대해 다시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의회의 동의 후에 민간위탁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재계약·재위탁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나. 검토 의견

□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및 내용

- 본 동의안은 마포자원회수시설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무를 환경·에너지 분야의 기술력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 기관에 재위탁하고자 하는 것임.
- 이는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환경기초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등 민간위탁 사무기준과 사무내용을 충족하고 있음.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와 제6조>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2. 4. (생략)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환경기초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3. ~ 9. (생략)

□ 민간위탁 동의안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민간위탁 조례 제4조의4에는 민간위탁 동의안에 포함되어야 사항으로 총 9가지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본 동의안에는 이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으나, **소요예산에 대한 산출근거¹⁾**가 누락되어 있음.

1)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문서는 기 작성되었으나, 동의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이 문서는 2020년 10월 21일(수)에 환경수자원위원회로 제출되었음.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4>

제4조의4(민간위탁 동의안) ① 시장이 제4조의3에 따라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9.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 민간위탁 추진 절차

- 마포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계획²⁾은 2020년 6월에 수립되었고, 같은 해 7월에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한 결과, ‘적정’ 통보를 받은 바 있음³⁾.
- 민간위탁 추진 절차 중 재위탁(공모)의 경우, 사전조사 → 추진계획 수립 →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개최 → 시의회 보고(동의) → 시의회 의결 → 적격자 심의위원회 개최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본 계획의 경우 현재까지는 이러한 추진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음.

<2020년 제5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부서명	위탁사무명	유형	위탁기간	심의결과	심의사유
자원순환과	마포자원회수시설	시설/ 재위탁(공모)	3년	적정	-

2) 추진 근거, 추진 절차, 시설 현황,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민간위탁 추진 계획, 소요 예산 및 추진 일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자원순환과-10101, 2020. 6. 11.)

3) 제5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조건부적정 후속조치 심의결과 통보(조직담당관-8899, 2020. 7. 27)

□ 민간위탁 종합성과 평가 내용 요약

- **종합 의견:** 마포자원회수시설은 2018년 6월부터 한중산업개발주식회사 (이하 '한중산업')에 위탁하여 운영되고 있음. 이 시설은 종전 난지도 매립장이었던 하늘공원과 노을공원 사이에 위치하여 공원을 방문하는 많은 시민들에게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이미지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다만, 시설 운영과정에서 사회적으로 기여하는 것은 화장실 개방 등에만 머물러 있어 기관의 사회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민간 부문의 전문성이 활용되어 일정 사업성과를 창출하고 있으나, 단순히 사업을 진행하는 데 급급할 뿐 지속가능한 발전전략까지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개선 요청 사항

- 시설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설비 유지보수 주기와 내역을 관리하기 위한 전사적자원관리⁴⁾시스템이나 업무관리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시설물 노후화로 인한 사고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소각 효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법정교육, 직무역량 강화교육, 관리역량 교육 등 전문성 제고를 위한 직원교육이 부재하므로 효과적 인력양성을 위한 체계적 교육훈련제도를 마련해야 함
- 예산 집행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 노력이 부족함(예: 회계시스템 사용, 클린카드 사용, 예산 절감 노력 등).

4) 기업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통합정보시스템(ERP: Enterprise Resource Planning)

-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한 기관의 운영 노력이 매우 미흡함. 위탁사무의 공공성을 감안하여 사회적 기업 물품 구매, 제로페이 도입 방안 강구, 견학 프로그램 활성화 등 지역사회 공헌을 위한 전반적인 개선 노력이 요구됨.
- 2019년 서울시 안전감사에서 지적된 '비산재처리실 철골구조 부식 및 내화재료 탈락 보수' 건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으므로 즉시 조치해야 하며,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해야함.

□ 검토 의견(결론)

-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사전에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일부 서류가 누락된 점을 제외하고는 절차와 내용 상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전술한 바 있는 민간위탁 종합성과 평가에서 제기된 개선 요청 사항에 대해 조속히 조치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재위탁 사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소관부서의 좀 더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됨.

- 아울러, 최근 마포자원회수시설에서 발생한 장기간의 파업과 관련하여, 근로자 측의 요구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좀 더 나은 근로여건 조성을 위해 수탁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보다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